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가단207206(본소), 2022가단8867(반소)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청구의 소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현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12. 접수 제181367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28,209,9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부부 사이였는데 2015. 8. 11.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고, 2017. 8. 10.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해당 사건의 항고심 계속 중인 2020. 5. 29.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 내용 중 일부로, 피고는 그 소유인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빌딩 지하 1층 E호 154.44㎡ 중 60㎡를 분할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원고가 본등기를 요청할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본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후 위 항고심에서는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7. 30.경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과 F호로 분할한 다음 2020.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분할대상 재산으로서 원고가 791,097,1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이를 소극재산에 반영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위 조세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겨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사항, 합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다시, 위 재산분할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체납 국세 791,097,170원이 있다는 전제에서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합의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600,000,000원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의 합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791,097,170원의 조세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한 이상 재산분할은 600,000,000원이 아닌 원고의 순재산 471,790,073원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나머지 128,209,927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항고심 계속 중 이와 별개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항고심에서는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가 각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조세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원고가 128,209,927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기록을 살펴봐도 피고 주장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서, 원고의 체납 국세 791,097,170원이 있다는 전제에서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선고되었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것인데, 원고에 대한 791,097,170원의 조세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한 이상 재산분할은 600,000,000원이 아닌 원고의 순재산 471,790,073원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나머지 128,209,927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28,209,927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호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C에 있는 D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G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다세대), 계단실, 기계실,
주차장

지하2층 725.91㎡ 지하1층 808.80㎡ 1층 552.84㎡ 2층 516.96㎡ 3층 501.36㎡ 4층
479.2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C 대 934.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1층 E호 철근콘크리트조 48.7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34.3분의 15.50. 끝.

